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0호 2025. 2. 10. (월)

고시 · 공고

- 2025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 고시 ----- 2
- 2025년 급수공사 단가 고시----- 3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 공고----- 35
- 2025년 목포시 반려동물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43
- 공인 폐기 공고 ----- 4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2025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고시

2025년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1㎥당 부과금액을 목포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10.

목 포 시 장

□ 원인자부담금 1㎥당 부과금액 □

1. 2025년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총 공사비(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를 당해 수도시설의 생산량(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

2. 1㎥ 원인자 부담금 : 405,000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 당)	377,000	385,000	409,000	420,000	430,000	442,000	480,000	용수량 86,500㎥/일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 당)	471,000	489,000	518,000	522,000	513,000	511,000	490,000	용수량 86,500㎥/일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 당)	324,000	335,000	342,000	342,000	340,000	362,000	392,000	용수량 124,000㎥/일

연 도	2024년	2025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 당)	398,000	405,000						용수량 124,000㎥/일

3.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2025년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2025년도 급수공사에 적용할 급수공사 단가(구경별 표준 급수공사비)를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10.

목 포 시 장

☐ 구경별 표준 급수공사비 전년 대비표 ☐ (단위 : 원)

구 분 \ 구 경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비고
연 장 (콘크리트)		10m	10m	10m	10m	10m	10m	
2024년도	계	2,059,000	2,565,000	3,120,000	4,065,000	7,950,000	10,124,000	
	시 설 분담금	196,000	529,000	940,000	1,705,000	2,881,000	4,586,000	
	수수료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24,000	
	자재대	299,000	397,000	484,000	646,000	1,367,000	1,625,000	
	공사비	1,552,000	1,627,000	1,684,000	1,702,000	3,678,000	3,889,000	
2025년도	계	2,145,000	2,654,000	3,344,000	4,291,000	8,102,000	10,510,000	
	시 설 분담금	196,000	529,000	940,000	1,705,000	2,881,000	4,586,000	
	수수료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24,000	
	자재대	307,000	406,000	592,000	752,000	1,347,000	1,658,000	
	공사비	1,630,000	1,707,000	1,800,000	1,822,000	3,850,000	4,242,000	
증·감		증 86,000	증 89,000	증 224,000	증 226,000	증 152,000	증 386,000	

※ 단일 공사의 경우 장비대, 섬 할증, 포장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0.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신설 및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진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세무조사 관련 용어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 현장확인 개념 명확화 및 기획세무조사 정의 신설
-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 조사대상 정기선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30건 초과시 → 전체)
- 납세자의 권익보호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7조)
 -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 시 조사책임자 역할 규정 및 소명기회 부여
- 법령과 중복된 조문(조사기간 연장, 수색압수 금지, 장부서류 예치 등) 삭제 및 세무조사 진행절차순으로 조문체계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개선 의견 반영 (2024. 2. 4.)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5. 2. 10. ~ 3. 2. (20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2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 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라.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과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연간 조사계획과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나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필요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실시하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의미한다.
 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 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4. 고용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시장은 전라남도 세무조사 연간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및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① 시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른 처리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①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시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9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사전에 조사장소를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25조(조사시간)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야간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고 한다.)에营业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5호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시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귀 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목포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목포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자격	
	주소(사업장)			

연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목포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목포시장 귀하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세정과(전화: 061-270-32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 희망장소	
	장소 선택사유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검토내용

검토결과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	
조사장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팀장	부서장
결재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신청인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실시 요청일자			
신청 사유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검토내용

검토결과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	
조사실시 일자	

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	팀장	부서장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61-270-3286)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70-820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충)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제조업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제 기)	건설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판매업 ()	
(전 화) (팩스)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운송업 ()	
○ 세무대리인(사무소) : (성명) (전화)	기 타 ()	

목포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목포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우편번호 : 530-701

※ 문의사항 전화 : (061) 270-3286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사업년도별 결산보고서(부속서류 포함) 및 세무조정계산서
- ☐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 ☐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 사업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 식 목 차

-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전라남도 목포시 00동 00번지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 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 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 계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①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 정 당 세 액 (d)	기납부 세 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 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b)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서식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제곱미터당 50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 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③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④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⑤=(③-④)															
급여지급일															
⑥산출세액															
⑤×(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⑤)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 공고

다양한 각 분야의 강사를 통해 건강증진(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으로 교육 대상자의 교육효과 및 참여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공개 모집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목포시보건소

1 모집분야 및 인원

사업명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합 계		10	- 해당 교과 전공자 - 모집분야 관련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각 분야별 강의 경험이 풍부한자 - 해당과목 관련 분야 협회 입상·수상 실적이 있는 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활체육, 스포츠 댄스 등 놀이체육	3	
금연지원 프로그램	금연교육 전문강사	7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1)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기준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는 사람

- 1) 해당교과 전공자
- 2) 모집 분야 관련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
- 3) 해당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
- 4) 각 분야별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 5) 해당과목 관련 분야 협회 입상·수상 실적이 있는 자

3 강의형태 및 수당

가. 사업기간 : 2025년 4월~12월(프로그램 종료 시)

※ 사업 기간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강사수당 : 1회/1시간 당 80,000원(소득세, 지방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 추후 변동시 변동적용

다. 진행방법 : 목포시보건소 내 프로그램 운영 수업

4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

가. 서 류 심 사 : 응시지원서, 강의계획서 등 서류심사

나. 면 접 심 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진행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별도 통보하며 응시자가 정원이내인 경우
면접심사 없이 채용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 2025. 2. 21.(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5. 2. 11.(화) ~ 2. 18.(화)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5. 2. 17.(월) 09:00 ~ 2. 18.(화) 18:00(2일간)

나. 접수방법

- 방 문 접 수 : 목포시 보건소 1층 접수처(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 문의사항: 목포시 건강증진담당자 ☎061-270-8925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나. 이력서 1부(서식 2)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강의계획서 1부(서식 3)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마. 관련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사. 강사등록카드 1부(서식 5) ※ 합격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강사로 선정된 경우 목포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의 일정에 따라 우선순위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자(☎ 270-8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결과로 최종집계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합격자가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5일 이내 근무의사가 없을 경우 별도 모집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서식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접수번호	
------	--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최종학력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년 월 일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2025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보건소장 귀하

[서식2]

이 력 서

사 진 (3.5cm×4.5cm)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연락처)		새주소로 기입				
① 자택전화() ② 이동전화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식3]

강 의 계 획 서

과목명		강사명	
강의목표			

강의내용

회차	주제	강 의 내 용	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성명: 2025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서식은 강의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서

목포시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프로그램 강사 모집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근무 기간 종료 후 3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채용 모집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보건소장 귀하

[서식 5]

강사등록카드

구분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명	소속		직위(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주택)	(직장)	
	E-mail		휴대전화	
과정명				
교과목				
은행명 및 계좌번호	(00은행) 000-00-000000			
학력	학교	학위	전공과목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직책	
	0000.00 - 0000.00			
연구실적*				
강의내역*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목적 : 강사등록, 강사비 지급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위(급),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학력, 주요경력, 연구실적, 강의내역 ■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활동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강사등록 및 강사비 지급의 서비스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 수집동의	■ 강사등록 및 강사비 지급의 목적으로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진·비디오 촬영 및 활용 동의	■ 강의 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있으며 촬영된 자료는 해당보건지소 재활보건팀에서 소유합니다. 또한 위 정보가 목포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목포시 반려동물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5년 반려동물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6.

목 포 시 장

모집결과

구 분	응 시 번 호
반려동물놀이터	신○균, 문○례

※ 근로계약 일정 등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순위, 기타 문의사항은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270-3625)

공인의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훼손 및 미사용으로 인한 공인 폐기
2. 폐기일 : 2025. 2. 10.(월)
3. 수 량 : (폐기) 1개
4.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비 고
폐기	목포시공원녹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정방향)	

2025년 2월 10일

목 포 시 장